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24누50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돋움터(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공동대표자 권은숙, 서성민, 박민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고, 피항소인	충청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호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구합5136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에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1)]

열람용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1. 26. 자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중 「피고가 정보 비공개 결정한 충주여자고등학교(인지일자: 2018. 10., 사건개요: 수업중 운동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피해학생들의 몸을 잡아 올리는 등으로 추행), 충주여자고등학교(인지일자: 2018. 10., 사건개요: 수련회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1회), 충주여자고등학교(인지일자: 2018. 10., 사건개요: 수업중 성희롱성 발언을 1회), 이수초등학교(인지일자: 2018. 10. 15.),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인지일자: 2019. 6. 10.), 청주동중학교(인지일자: 2019. 10. 18.) 사건에 대한 각 '수사현황'

1) 원고의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준비서면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등'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8행의 "발행한"을 "발생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 2행의 "이하 '이 사건 부존재 이유 비공개'라고 하고,"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20행, 5쪽 10행 및 16행의 각 "각 '수사현황'"을 "각 '수사현황 진행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내용'"으로 고치고, 위 5쪽 16행의 수정에 따른 "처분내용'" 다음에 "(이하 위 비공개 결정한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6, 17행의 "(이하 '이 사건 비공개 수사현황 부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비공개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수사현황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는 피고가 관할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지 또는 종결되었는지 등 수사 진행상황, 수사가 종결된 경우 그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및 처분의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여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법원이 위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인 수사기관의 처분결과통보를 비공개로 열람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보더라도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가 처분 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대상자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는 등으로 인하여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 처분결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생활 침해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문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요구한 특정 정보만을 추출하여 이를 표로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정리한 엑셀파일 등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처분결과통보 문서를 공개할 필요 없이 원고가 요구한 특정 정보만을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처분 대상자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추가적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될 우려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석 전자서명완료

판사 고진흥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창현 전자서명완료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별지1

사건발생 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 최초사건 인지 익명·실명 신고 여부, 감사실시 여부,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기간, 수사기관 등에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 피해자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

열람용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창현, 송달물 등재일시:2025.04.03 09:11, 출력자:류하경, 다운로드일시:2025.04.03 10:10

정본입니다.

2025. 4. 3.

대전고등법원(청주)

법원사무관 명승흠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